

● 제331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2716)

2025. 6. 1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박 석 의원 발의】

의안번호 2716

I. 개정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가. 제 출 자 : 박석 의원 (찬성18명)

나. 제 출 일 : 2025. 5. 26.

다. 회 부 일 : 2025. 5. 29.

2. 제안이유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보호·지원시설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시장이 육성·지원해야 하는 피해자 보호시설에 해당 시설을 추가하여 여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불법촬영물 등·신상정보의 삭제지원 및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추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시장이 육성·지원해야 하는 시설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을 추가함(안 제3조).
- 나. 상위법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중복된 ‘디지털성범죄 예방 등’에 관한 조항은 삭제함(안 제14조의5 및 제1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1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시장이 지원하는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규정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중복된 ‘디지털성범죄 예방 등’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여 여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 및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사항 검토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 동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 피해 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 중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스톱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여성폭력 피해자가 스톱킹 피해자 지원시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되었음.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을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령상 보호·지원시설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되었음 [법률 제20934호, 2025. 4. 22., 일부개정].

나. 개정안 주요내용

(1) 시장의 책무 (안 제3조제4항)

- 안 제3조제4항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보호·지원시설에 스톱킹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이 포함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시장의 책무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이에 스톱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 가능한 보호·지원시설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관련 법령 간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표〉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③ (생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와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④ ----- -----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안 제14조제5호 신설)

- 안 제14조제5호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물 등·신상정보의 삭제지원 및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근거를 신설하고, 이에 따라 해당 내용을 포함하고 있던 기존 제17조는 정비 차원에서 삭제함.

〈표〉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7조(디지털성범죄 예방 등) 시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의5(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시장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의 삭제지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삭제>

- 동 개정안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¹⁾을 근거로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과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이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후적 대응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피해 회복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개정의 타당성 있으며, 동 조례상의 피해 유형별 지원을 규정하는 체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규정 가능한 것으로 보임.

제14조의2(성매매피해자 지원) ① 시장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의3(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시장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의 적정한 보호 및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의4(데이트폭력피해자 지원) 시장은 데이트폭력피해자의 적정한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다만, 안 제14조5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규정 신설함에 따라 기존 제17조를 정비 차원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첫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1항2)의 ‘불법촬영물 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위임규정에 따라 해당사항은 이미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 있음³⁾.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유포 및 확산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또한 법 제7조의3⁴⁾에서는 제1항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⁵⁾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출연기관인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수행하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음.
- 따라서, 안 제14조의5 ‘디지털피해자지원’ 규정의 신설은 상위 법령의 위임규정과 해당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조례 해석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행정 집행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 관련하여 법제처(2022)는,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다른 조례 또는 규칙보다 우선 적용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제정 시 해당 조항 간 우열 관계 설정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하고 있음.
- 둘째, 삭제하고자 하는 동 조례 제17조는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모두 규정하여, ‘범죄 사전 예방’ 과 ‘사후 조치’ 모두를 포괄하는 조례적용 범위를 갖고 있으나, 안 제14조의5는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에 한정되어 있어 ‘범죄 사전 예방’에 관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업무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법 제7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연기관

- 따라서, 동 조례의 입법 목적이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에 있는 점을 고려할때, 디지털성범죄 발생 이후의 삭제 지원 및 일상 회복 등 사후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항을 신설하면서, 범죄 예방에 관한 기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조례의 목적과 입법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를 거쳐 개정할 필요가 있음.

다. 집행부서 의견 : 수정가결

- 집행부서인 양성평등담당관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추가하는 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동의하나,
- 디지털성범죄 관련 개정 조례안은 현 조례에서 포함하고 있는 예방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지 않고 불법촬영물 삭제 및 피해자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은 정책의 범위와 효과성이 축소될 우려가 있어 수정 의견을 제출함.

3 종합의견

- 동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보호·지원시설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이 포함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간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됨.
- 다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규정 신설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를 해석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바임.
- 또한 피해자보호 및 지원 체계 강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규정이나,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입법 취지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상위법 개정 조항의 시행일(2025.7.23.)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시행 이후 관련 부서의 지침 마련 등 추가 정비가 필요함.

전 문 위 원	김소은	02-2180-8144
입법조사관	한송희	02-2180-8146

관련 법령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법촬영물 등과 신상정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유포 및 확산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3., 2025.3.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